

大學의 財政壓迫과 解消方案

金 在 範
(中央大 教育學科)

대학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基準財政收入을 증액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의 教育外的인 수많은 변수와 조건들을 감안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納入金의 상향 조정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1. 序 言

大學(校)에 있어서 재정 압박이란 基準財政需要額에 비하여 基準財政收入額이 부족하여 대학이 計劃한 活動을 그대로 전개하지 못하게 되거나 負債를 지고라도 계획한 활동을 그대로 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의 機能이 서서히 弱화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 당국이 敎授·研究·奉仕 등에 관한 활동 계획을 각종 法令上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大學運營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과 대학 자체가 設定한 각종 기준, 그리고 豫算編成指針 등에 依據하여 구체적으로 樹立하고, 이 계획을 推進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推算되는 經費가 예정되는 收入金額보다 그 規模가 커지게 될 때에 대학이 당초 계획에 포함된 活動內容과 敎育與件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縮小하거나 再調整하여 소요 경비를 예정 수입에 맞도록 減縮하는 상태 또는 소요 경비에 맞도록 예정 수입을 증대시켜 부채

를 지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組織的인 교육 활동의 대부분이 敎育財政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또는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더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육 재정의 제약이나 재정 압박이 교육 활동 자체나 교육의 결과를 萎縮 또는 弱화시키는 정도가 되도록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첨언하여 둘 것은 재정 압박이 교육의 결과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測定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압박의 정도 자체는 論理的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간의 相對的인 比較와 評價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長期的인 眼目으로 볼 때 대학이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기준을 維持해야 할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서히 惡化되고, 이로 인하여 大學敎育의 質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또 敎職員과 學

생들의 士氣를 低下시키고, 部署間에 對立과 葛藤을 조장하게 되며, 調和와 團合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存廢와 興亡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을 管理하고 運營하는 데 있어서 재정 압박은 대단히 중요한 問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압박은 일부 不實한 私立大學에 국한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대학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國立大學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現實적으로 當面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즉 재정 압박의 한 가지 징후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教授不足率, 또는 教授確保率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국립 대학교의 경우에도 필요한 教授要員을 만족스럽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국 調查對象 108 개 대학의 전체 평균 教授確保率은 약 68%(100 명이 필요한데 68 명을 확보)로 대단히 저조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겨우 11%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特記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¹⁾

우리나라의 대학이 최초로 재정 압박을 받기 시작한 時期를 正確하게 언제부터라고 지적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그 압박의 정도가 누적·심화되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대로 放置하거나

뒤로 미루어 둘 수 없는 限界에 도달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人들이 대학의 재정 압박의 실상을 確認, 整理해 보고 또 재정 압박을 받게 되는 原因을 밝혀 보면서 적절한 解決策 내지는 合理的인 對策을 논의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意義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財政壓迫의 原因

대학이 재정 압박을 받게 되는 원인은 논의하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각 대학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教育經費, 즉 基準財政需要額의 增額을 불가피하게 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教育 여건과 基準財政收入源으로 指定된 各項目들의 適切性 與否, 그리고 教育財政政策의 內容과 方向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재정 압박의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기준 재정 수요액(지출 예산), 기준 재정 수입액(수입 예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재정 정책의 실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기준 재정 수요액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항목은 人件費, 管理運營費, 學生經費, 入試管理費, 研究費, 固定資產買入費(施設費), 圖書購入費, 其他經費, 豫備費 등이다.²⁾ 이 중에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표 1> 전일 교수 확보율별 대학수

확보율별	대학별	총 합 대 학		단 과 대 학		특 수		계
		국 립	사 립	국 립	사 립	교 육	신 학	
92.81% 이상			3	1	2	2	3	11
67.87~92.81% 미만		2	8	7	5	5	7	34
42.93~67.87% 미만		8	21	3	19	4	2	57
42.93% 미만		—	—	—	5	—	1	6
계		10	32	11	31	11	13	108

資料 ;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5 學年度 大學機關評價報告書(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5), p. 61.

-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5 學年度 大學機關評價報告書(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5), p. 60.
- 2) 기준 재정 수요액(지출)과 기준 재정 수입액(수입)에 포함된 항목의 구분은 學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設立別로도 달리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 學年度 大學財政·經營評價報告書(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 pp. 133~134 를 참조.

人件費로서 전체 수요액의 52.3%이고, 다음이 학생 경비 즉 將學金으로 18.1%, 관리 운영비가 16.2%, 고정 자산 매입비, 즉 시설비가 13.2%의 순으로 되어 있다.³⁾

한편 기존 재정 수입액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항목을 보면 納入金, 手數料, 轉入金 및 寄附金, 基本財産收入, 事業收入, 借入金, 移越金, 其他收入 등이며, 이들 항목 중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학생들이負擔하고 있는 납입금이고 전체 수입의 81.3% (사립 종합 대학에 있어서는 8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의 設立者(국립 대학은 國家, 사립 대학은 學校法人)가 부담하고 있는 전입금(국립은 국고 부담)은 9.3%(국·사립 종합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⁴⁾

대학에 관한 재정 정책 중에서 主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만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教育經費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學生負擔 즉 受益者負擔原則을 택하고 있다.⁵⁾ 이는 기존 재정 수입액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設立別에 관계 없이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납입금임을 보아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둘째, 국립 대학에 대한 國庫補助 優先原則을 택하고 있다. 당국은 재정 형편 즉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사립 대학에 대하여는 국고 보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理工系에 대해서 實驗·實習費補助라는 명목으로 다소 보조를 하고 있으나 그 액수는 근소하다.

셋째, 대학의 재정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는 적·간접으로 規制 내지 統制原則을 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대학의 재정 수입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납입금을 국가의 재정 형편(租稅制度, 收入規模)과 재정 정책적 입장(物價上昇 抑制, 國民의 負擔能力)에 따라서 강력

히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豫算編成時에 지출 항목의 구성비 즉 학생 경비(장학금), 시설비의 비중 등을 行政的으로 지시하고 있다. 특히 사립 대학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起債를 하고자 할 때에도 분교 당국의 承認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보아도 統制原則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째, 국·사립 대학간 納入金의 差等原則을 택하고 있다. 과거 국립 대학 학생들의 납입금액은 사립 대학 학생들의 반, 즉 2분의1에 불과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어느 정도 是正되어 약 3분의 2 정도(60%)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보아서도 納入金의 差等原則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⁶⁾

대학에 대한 당국의 재정 정책을 어느 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립 대학에 在學하고 있는 학생들의 學父兄이나 국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는 다 같이 국가가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租稅負擔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은 국립 대학에 대한 國庫補助 優先原則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즉 현행 국고 보조의 기준 내지 정책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사립 대학 학생들은 국립 대학 학생들보다 납입금은 더 많이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보면 국립 대학 학생들보다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당국은 教育의 機會均等, 質的인 平準化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셋째, 대학에 대해 財政支援을 하면서도 전연 統制를 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재정 지원 정도와 통제 정도간에는 그 相關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은 별로 하지 못하면서 강력한 行政統制

3) 韓國大學教育協議會, 上揭書, p. 79.

4) 韓國大學教育協議會, 上揭書, p. 76.

5) 金鍾喆, “大學財政의 適正化”, 韓國高等教育研究(서울; 培英社, 1979), p. 354.

6)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前揭書, p. 96.

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많은 大學人들 사이에서 提起되고 있다.

끝으로 정부 당국은 대학의 운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대학에 진정한 自律權을 부여하되, 否定·不條理가 있거나 社會的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이는 단호하게 剔抉함으로써 대학과 사회에 警覺心을 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대학에서 빚어진 특수한 事例를 一般化하여 모든 대학을 同一視하고 劃一的으로 대하는 拙劣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대학이 재정 압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 제시할 수가 있다.

첫째, 과거로부터 累積되어 온 外廓施設(校地, 講義室 등), 實驗·實習 기자재, 教授要員 등의 절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기준 재정 수요액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것이 재정 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1974년부터 시작한 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시에 사용한 借款도 이제는 償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재정 수요액의 증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준비가 없을 경우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세째, 앞으로 대학에 대한 기대 즉 수월성 추구, 치열한 국제 경쟁에의 대비, 국가·사회 발전에의 先導의 役割 등 대학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기대 수준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기준 재정 수요액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한다.

네째, 대학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새로운 요구의 증대, 즉 생활 수준의 향상, 새로운 편의 시설의 출현, 생활 양식의 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處遇改善, 寄宿舍, 獎學金, 休息空間, 學習環境 改善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므로 이에 따르는 기준 재정 수요액의 증대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다섯째, 기준 재정 수입액의 증대를 위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가 대학의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즉 기준 재정 수

요액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요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관계 당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못하고 臨機應變의으로만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간에는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강의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정책 당국자와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大學의 教育環境이 어느 정도로 惡化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實際大學의 問題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公式的인 立場을 천명할 때와는 달리 消極的이 되어 대학의 재정 압박이 더욱 加速化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계의 指導級 人等들이 公式的·非公式的인 發言을 통해 대학이 당면한 財政·施設·教授의 不足 등 여러 가지 苦衷과 더불어 大學教育의 重要性을 피력하고, 대학의 고충을 해결하고 건전한 발전을 圖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하며 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밝힌 例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發表나 意思가 행동으로 實踐되었거나 實現된 事例는 많지 않았다.

3. 解消方案의 論議

대학이 받고 있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措置는 기준 재정 수요액을 減縮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재정 수입액을 현재보다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준 재정 수입액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節次와 方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 현행 대학의 財政財源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 항목을 검토하여 증액 내지 증대시킬 가능성 있는 항목을 찾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대학의 수입 항목들이 증액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다소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새로운 수입 항목을 개발하거나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수입 항목을 개발하고 탐색함에 있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教育外的인 수많은 變數와 條件들, 예를 들면 국민의 負擔能力, 租稅體系, 物價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稅制 및 經濟 등 관련 분야 專門家들과의 協同의인 努力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협동적인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육 분야의 몇몇 사람이 모여서 몇 가지 항목을 찾아 提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空理·空論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대학의 기준 재정 수입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수입 증대의 가능성이 큰 항목을 중점적으로 논의코자 한다.

대학의 기존 수입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증액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納入金, 轉入金, 國庫負擔 그리고 寄附金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증대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1) 國庫負擔

국고 부담은 국가가 租稅로 수입한 금액을 국립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며, 사립 대학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라는 명칭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 부담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에 의한 收入을 증액해야 함을 前提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의 각종 현실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國民所得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국민에게 부담을 무리하게 지워서 다소간 재정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南·北이 極限의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軍備 競爭面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國防費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社會福祉의 實現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 해소, 貧富의 격차 해소 등 이 部面의 문제 해결을 위한 財政 投資를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教育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中學校까지 無償義務教育으로 확대시켜야 하고, 高等學校의 平準化와 사립 고등학교의 運營難, 國民學校의 過密學級, 大規模 學校, 敎員 處遇改善 등 山積한 문제로 인하여 文教豫算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大學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無理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매년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行政府 자체가 所要豫算의 상당한 액수를 削減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會에서 審議하는 과정에서도 삭감되는 것을 보면 국가의 재정 증대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의 기준 재정 수입액을 국고 부담 증대를 통하여 증액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豫見된다.

2) 轉入金

전입금은 사립 대학의 設立者 즉 學校法人이 대학에 지원하여 주는 經費로서 국가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과 같이, 학교 법인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 그 증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사립 대학을 유지·경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 법인은 출발 당시부터 그 재산의 조성이 非收益性 재산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收益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실한 土盤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립 대학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을 증액토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학교 법인들은 지난 수년간 학생수 증가에 따른 施設投資를 무리하게 하여서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政策的인 次元에서 검토하여 학교 법인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국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寄附金

기부금이란 사회 각계의 특지가가 대학과 학문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교육을 위해 條件 없이 提供하는 것으로 대학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기부금은 편의상 사회 각계의 유지와 기업인들에 의한 것과 졸업생을 비롯한 대학의

유관 인사들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가 있겠다.

우선 사회 각계 人士들이나 企業人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부금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여 왔으나, 法的인 조치의 미미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시일내에 기업인이나 사회인들이 대학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대학에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동창회원이거나 유관 인사들에 의한 기부금도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역시 어렵다고 하겠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당국이 유의할 것은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이 손비 처리가 되도록 하는 法的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며 기부금으로 인한 대학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綜合 對策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자체가 대학을 위해 제공하는 기부금을 받아 각 대학에 배분하는 형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納入金

납입금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각종의 教育·奉仕活動에 대한 代價로서 교육받는 개인이 대학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 제도는 현대적인 大學教育制度가 마련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存續되고 있는 大學의 經費調達方式의 하나이며 또 受益者負擔原則에 따라서도 그 正當性이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大學教育에 投資한 利益은 부분적으로 국가·사회에도 還元이 된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받은 개인에게 모두 환원된다는 측면에서 납입금 제도는 그 妥當性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 자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이 제공하는 教育·奉仕活動을 하나의 商品으로, 대학교육을 받고자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을 需要로 또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 학생 정원을 供給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납입금은 바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價格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韓國的 現實에서는 대학

입학 정원이 지원자 수를 따를 수 없는 實情이고 많은 재학생들이 보다 質 높은 教育·奉仕活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價格 즉 납입금은 上向 調整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논리가 성립된다.

납입금의 상향 조정은 대학 진학·희망자 수를 다소 감축시킬 수 있는 附隨的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교육에 대한 過剩 投資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收入金의 일정 부분을 獎學金으로 확보한다면 이 점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납입금을 상향 조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종 상황을 검토하게 하고 또 大學이 제공하는 教育·奉仕活動의 質을 기초로 그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방법이 대학의 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方案이라고 생각된다.

4. 結 言

대학교육의 質은 향상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대학에 대한 개인적·국가적인 기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를 인정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던 개인과 가정이 부담하는 대학의 필요 經費는 調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국가의 재정 형편을 빙자하여 국고 부담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고, 또 國民經濟的인 여건을 이유로 受益者 負擔도 더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지속하는 한 대학교육의 質의 水準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大學의 教育與件은 더욱 惡化될 것임은 自明하다. 따라서 당국은 대학의 機能을 정상화하고, 대학이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政策決定을 해야 한다.

끝으로 첨언하여 둘 것은 대학교육의 결과는 개인과 가정에 還元되고 또 教育에 대한 過剩 投資를 抑制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納入金의 上向 調整이 현실적으로 大學의 財政壓迫을 해소하는 捷徑이 된다는 것이다. *